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7.

발 의 자 : 배현진 · 고동진 · 정성국
박정훈 · 김성원 · 우재준
유용원 · 김형동 · 김예지
조경태 · 한동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·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· 대여 · 배포 ·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,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.

그런데 최근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 등 무인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· 청소년유해약물 ·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영업을 하면서 성인인증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 ·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, 성인인증장치가 이용자의 타인 신분 · 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 · 변조 · 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, 청소년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

고 있음.

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·청소년유해약물·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,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·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·변조·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,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,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.

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·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·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9호,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 및 부칙 제4조 신설 등).
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“성인인증장치”란 이용자(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의 상대방 및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자를 말한다. 이하 제4장의2에서 같다)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무인매장 또는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에 부착하거나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기계·설비·장비·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

나. 가목 중 둘 이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

제4장의2(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인증제도의 운영

제32조의2(성인인증장치의 인증) ① 성인인증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성인인증장치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인인증장치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을 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,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신원확인 수단(이하 이 조에서 “신원확인수단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
2. 이용자가 해당 신원확인수단의 정당한 이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
3.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원확인수단의 위조·변조·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
4. 성인인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, 인증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갖출 것
5. 그 밖에 청소년 보호,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

③ 인증을 받은 성인인증장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인인증장치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그 밖에 인증 신청 및 인증의 방법·절차, 인증수수료 및 인증서

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3(인증의 취소 등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인인증장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성인인증장치가 인증 당시 예상치 못한 결함 또는 품질저하 등으로 인하여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내에 해당 성인인증장치가 인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인증 효력정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4(미인증 성인인증장치의 판매·공급 및 설치·운영 금지) ① 성인인증장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인인증장치(이하 “미인증 성인인증장치”라 한다)를 판매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시청·관람·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

업주는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성인인증장치는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인인증장치로 본다.

제32조의5(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점검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공급되거나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성인인증장치가 미인증 성인인증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인인증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성인인증장치를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제조·수입·판매·공급 또는 설치·운영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미인증 성인인증장치인 경우

2. 제32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

3. 고장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제조·수입·판매·공급 또는 설치·운영의 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6(시험·검사 또는 기술평가 의뢰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, 제32조의5에 따른 점검 및 그 밖에 성인인증장치 결함 여부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성인인증장치의 시험·검사 또는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32조의7(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적용)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, 제5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, 제6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4조제1항제1호·제2호의 규정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는 성인인증장치에도 적용한다.

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영리를 목적으로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판매하거나 공급한 자

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60조 중 “제15조(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5조(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
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
포장을 훼손한 자
2.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표
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
3.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공급한 자
4.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설치·운영한
자

제64조제1항 중 “제4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7호·제7호의2·제8호
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한 자
2. 제3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3. 제45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7호·제7호의2·제8호에 대한 시정
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행위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
행 전에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의 마련에 필

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요청하고 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까지 제32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성인인증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성인인증장치를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제3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제3항은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성인인증장치에도 적용한다.

제4조(기존 성인인증장치의 교체 등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설치·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(제3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성인인증장치를 포함한다)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성인인증

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·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<u>“성인인증장치”란 이용자(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·대여·배포·제공의 상대방 및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자를 말한다. 이하 제4장의2에서 같다)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무인매장 또는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에 부착하거나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u> <u>가. 기계·설비·장비·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</u> <u>나. 가목 중 둘 이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</u>
<u><신 설></u>	<u>제4장의2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인증제도의 운영</u>

<신 설>

제32조의2(성인인증장치의 인증)

① 성인인증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성인인증장치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인인증장치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을 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,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신원확인수단(이하 이 조에서 “신원확인수단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

2. 이용자가 해당 신원확인수단의 정당한 이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

3.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원확인수단의 위조·변조·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

것

4. 성인인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, 인증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갖출 것

5. 그 밖에 청소년 보호,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

③ 인증을 받은 성인인증장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인인증장치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그 밖에 인증 신청 및 인증의 방법·절차, 인증수수료 및 인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32조의3(인증의 취소 등) ① 성
평등가족부장관은 성인인증장
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
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인
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
취소하여야 한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2조
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성인
인증장치가 인증 당시 예상치
못한 결함 또는 품질저하 등으
로 인하여 제32조의2제2항에
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
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
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
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
할 수 있다. 다만, 인증의 효력
이 정지된 기간 내에 해당 성
인인증장치가 인증기준을 갖추
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증을
취소하여야 한다.

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
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
하거나 인증의 효력을 정지하
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
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

<신 설>

증취소 및 인증 효력정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4(미인증 성인인증장치의 판매·공급 및 설치·운영 금지) ① 성인인증장치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인인증장치(이하 “미인증 성인인증장치”라 한다)를 판매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·대여·배포하거나 시청·관람·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성인인증장치는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인증을 받지 아니한 성인인증장치로 본다.

<신 설>

제32조의5(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점검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공급되거나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성인인증장치가 미인증 성인인증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인인증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성인인증장치를 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제조·수입·판매·공급 또는 설치·운영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미인증 성인인증장치인 경우

2. 제32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

3. 고장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제조·수입·판매·공급 또는 설치·운영의 중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6(시험·검사 또는 기술평가 의뢰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, 제32조의5에 따른 점검 및 그 밖에 성인인증장치의 결함 여부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성인인증장치의 시험·검사 또는 기술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32조의7(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적용)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, 제5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, 제6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

제5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60조(벌칙) 제15조(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

및 제64조제1항제1호·제2호의 규정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는 성인인증장치에도 적용한다.

제59조(벌칙) ① -----

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영리를 목적으로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판매하거나 공급한 자

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6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-----
-----.

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64조(과태료) ① 제45조제1항제1호 · 제2호 · 제7호 · 제7호의2 · 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제15조(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

2.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

3.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공급한 자

4.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미인증 성인인증장치를 설치·운영한 자

제6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-----
-----.

1.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한 자

2. 제32조의5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<u><신 설></u> ② · ③ (생 략)	3. 제45조제1항제1호 · 제2호 · 제7호 · 제7호의2 · 제8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